

대법원 2022. 7. 28 선고 2022다23038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7. 28 선고 2022다230387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2. 3. 31 선고 2021나44883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

피고, 상고인 망 B의 소송수계인

1. C

2. D

3. E

4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

담당변호사 박무협

판결 선고 2022. 7. 28.

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나44883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천대엽, 대법관 조재연, 주 심 대법관 민유숙, 대법관 이동원